"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"

강 남 구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부과취소

지방소득세(법인세분)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【부과취소 및 변경】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1. 납 세 자 : *****
2. 부과취소사유 :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취소 후 재부과
3. 건수 및 세액

(단위 : 원)

취소건수	당 초	취 소	차 액
1건	16,917,700	16,917,700	0

붙임 1.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결의결정서 1부.
2.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부과취소내역서 1부.
3. 부과취소 관련서류 1부. 끝.

주무관	최세영	지방소득세4팀장	최종권	세무2과장	김광수	기획경제국장	전결 01/15 김용운

협조자

시행 세무2과-1821 ( ) 접수 ( )

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전화 02-3423-5745 /전송 02-3423-8895 / young3043@gangnam.go.kr / 부분공개(6)